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3. 24.

##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3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0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3. 3. 10.

라. 회부일자 : 2023. 3. 10.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 가. 총 괄

(단위:백만원)

=	ı	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	비고	
Т			ᄑ	બાહ્યન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간주처리	(안)	-1 <u>-1-</u>
		계		718,317	715,594	710,357	5,237	2,723	
잍	! 반	회	계	695,027	692,304	687,067	5,237	2,723	
=	특 별 회 계		계	23,290	23,290	23,290	0	0	
	의료	급여기	기금	590	590	590			
		소득지 안 정 :		592	592	592			
	주	차	장	22,108	22,108	22,108			

## 나. 일반회계

##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액	1회추경(안)	비고	
		(A+B)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B)	-1
	계	695,027	692,304	687,067	301	2,723	
자	체 재 원	162,357	162,357	162,357	-	0	
	지 방 세	125,066	125,066	125,066	-	-	
	세 외 수 입	37,291	37,291	37,291	-		
의	존 재 원	464,455	461,732	456,495	301	2,723	
	지방교부세	19,326	19,326	19,261	65	-	
	조정교부금등	140,055	140,055	139,823	232		
	보 조 금	305,074	302,351	297,411	4,940	2,723	
보	전 수 입 등	68,215	68,215	68,215	-	0	
	순세계잉여금	68,215	68,215	68,215	-		
	보조금사용진맥	0	-	-	-		

##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1회추경(안)	비고			
TE	(A+B)	소계(A)	당초예산	간주처리	(B)	-1	
계	695,027	692,304	687,067	5,237	2,723		
정 책 사 업	562,131	559,356	554,138	5,218	2,775		
재무활동	11,868	11,868	11,868		0		
행정운영경비	121,028	121,080	121,061	19	-52		

#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 회 추 경 ( 안 )	<b>T</b> 7 =
太					게	226 226 472	227.000.000	A 11 220 207	증 감 률
총					계	226,336,473	237,666,860	△11,330,387	△4,77 %
민	원 7	<b>.</b> 사	담	당	관	255,994	255,994	0	0.00 %
소	통	담	Ţ	당	관	3,793,650	3,758,650	35,000	0.93 %
행	정	안	7	턴	국	150,108,490	142,832,531	7,275,959	5.09 %
	항	성 정	지	원	과	109,885,759	109,779,319	106,440	0.10 %
	지	<b>시</b>	행	정	과	11,351,922	10,840,683	511,239	4.72 %
	교	<u>l</u> 육	지	원	과	24,078,802	17,720,522	6,358,280	35.88 %
	주	민	안	전	과	4,024,958	3,724,958	300,000	8.05 %
	민	<u>l</u> 원	여	권	과	767,049	767,049	0	0.00 %
기	획	경	7	वी	국	53,531,915	72,419,261	△18,887,346	△26.08
	7	획	예	산	과	30,974,185	53,671,599	△22,697,414	△42.29 %
	X	역	경	제	과	14,616,048	10,805,980	3,810,068	35.26 %
	일	<u></u> 자	리 청	병 년	과	6,377,742	6,377,742	0	0.00 %
	자	1	무		과	464,972	464,972	0	0.00 %
	서	5	<u> </u>	1	과	467,531	467,531	0	0.00 %
	서	5	<u> </u>	2	과	631,437	631,437	0	0.00 %
보		건			소	18,646,424	18,400,424	246,000	1.34 %
	보	브 건	정	책	과	4,049,839	4,049,839	0	0.00 %
	건	<u></u> 강	증	진	과	11,401,090	11,401,090	0	0.00 %
	<u>o</u>	]	약		과	2,526,205	2,280,205	246,000	10.79 %
	9	1	생		과	669,290	669,290	0	0.00 %

### 나.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시업명	사 업 개 요	최종 예산액	기 정 액	1차 추경(안)
								△18,887,346
1	기 예	산	획 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 회 부담금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161,050	165,050	△4,000
2	기 예	산	획 과	예비비	- 추경 편성을 위한 감액	22,063,626	44,757,040	△22,693,414
3	지 경	제	역 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 스 운영	- 배송매니저 인건비 구비분	21,792	16,344	5,448
4	지 경	제	역 과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 은행나무시장 고객편 의시설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2,800,000	-	2,800,000
5	지 경	제	역 과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을 위한 직원 국외 업무 여비	909,503	894,503	15,000
6	지 경	제	역 과	기업지원센터 운영	- 기업지원센터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149,000	79,000	70,000
7	지 경	제	역 과	금천산업진흥 원 설립 타당성 검토	-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2,500	5,600	96,900
8	지 경	제	역 과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812,720		812,720
9	지 경	제	역 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	- 안양천 유휴공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설계용역비	10,000	-	10,000

## 5. 검토의견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14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에서 188억 8,73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 <u>기획예산과</u>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로 인한 부담금 400 만원 감액, 추경편성을 위한 예비비 226억 9,341만 4천원 감액 편성
-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배송매니저 인건비 544만 8천원 증액,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28억 증액, 해외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을 위한 직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증액, 기업지원센터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비 7,000만원 증액,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9,690만원 증액,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8억 1,270만원 증액, 안양천 유휴공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설계 용역비 1,000만원 증액 편성
-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금, 금천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설계 용역비 등의 현행 사업의 계속 추진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사업의 추경 편성은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가급적 예산 이월 및 반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1부.

#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 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